##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희국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917

발의연월일: 2020. 7. 14.

발 의 자:김희국·김석기·권명호

하영제・金炳旭・김정재

강기윤 · 김용판 · 김형동

김상훈 · 강대식 · 추경호

최승재 의원(13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검찰이 '라돈 사태'를 촉발했던 모 브랜드 침대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리면서 1급 발암물질인 라돈(radon)수치를 측정하고 이를 관 리하는 등 건축물의 실내공기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하지만, 현행법은 건축물 내부의 마감재료 기준을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및 권고기준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을 뿐, 건축물의 공사 이후 실내공기질을 측정·관리하는 절차가 없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주가 건축공사를 완료한 경우 사용승인을 신청하기 전에 건축물의 실내공기질을 측정하도록 하고,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따른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을 고려하여 관계부처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도록 하며, 사용승인 신청 시 실내공기질 측정결과서를 첨부하도록 함으로써 라돈 등 발암 물질로부터 생명을 보호하고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건축물의 실내공기질을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22조제1항·제2항, 안 제52조의5 신설).

###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 중 "공사완료도서"를 "공사완료도서, 제52조의5제3항에 따른 실내공기질 측정결과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공사완료도서"를 "공사완료도서, 실내공기질 측정결과서"로 한다.

제52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52조의5(건축물의 실내공기질 측정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주가 건축공사를 완료[하나의 대지에 둘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동(棟)별 공사를 완료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신청하기 전에 건축물의 실내공기질을 측정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측정하는 건축물의 실내공기질 기준은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따른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와 환경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 ③ 제1항에 따라 실내공기질을 측정할 때에는 실내공기 중 라돈(rad on)의 농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실내공기질 측정결과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측정결과는 제2항에 따른 실내공기질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④ 실내공기질의 측정 항목·방법 및 측정결과서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실내공기질 측정에 관한 관한 적용례) 제22조 및 제52조의5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2조(건축물의 사용승인) ① 건	제22조(건축물의 사용승인) ①
축주가 제11조·제14조 또는 제	
20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았	
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의 건축	
공사를 완료[하나의 대지에 둘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	
우 동(棟)별 공사를 완료한 경	
우를 포함한다]한 후 그 건축	
물을 사용하려면 제25조제6항	
에 따라 공사감리자가 작성한	
감리완료보고서(같은 조 제1항	
에 따른 공사감리자를 지정한	
경우만 해당된다)와 국토교통	
부령으로 정하는 <u>공사완료도서</u>	<u>공</u> 사완료도서, 제
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사	52조의5제3항에 따른 실내공기
용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u>질 측정결과서</u>
②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②
사용승인신청을 받은 경우 국	
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검	
사를 실시하고, 검사에 합격된	
건축물에 대하여는 사용승인서	
를 내주어야 한다. 다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사용승인을 위한 검 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사용 승인서를 내줄 수 있다.

- 1. (생략)
- 2. 감리완료보고서, <u>공사완료도</u>
  <u>서</u> 등의 서류 및 도서가 적합하게 작성되었는지의 여부
  ③ ~ ⑥ (생략)
  <<u>신</u>설>


- 1. (현행과 같음)
- 2. ------<u>공사완료도</u> 서, 실내공기질 측정결과서

#### ③ ~ ⑥ (현행과 같음)

제52조의5(건축물의 실내공기질 측정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건축물의 건축주가 건축 공사를 완료[하나의 대지에 둘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 우 동(棟)별 공사를 완료한 경 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제 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신청 하기 전에 건축물의 실내공기 질을 측정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측정하는 건축물의 실내공기질 기준은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따른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을 고려하 여 국토교통부와 환경부의 공 동부령으로 정한다.
- ③ 제1항에 따라 실내공기질을

측정할 때에는 실내공기 중 라 돈(radon)의 농도에 관한 사항 을 포함한 실내공기질 측정결 과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 우 측정결과는 제2항에 따른 실내공기질의 기준에 적합하여 야 한다.

④ 실내공기질의 측정 항목·방법 및 측정결과서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